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비 규정

제1조 (목적)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(이하 학회)는 학회 산하의 연구팀, 지회, 혹은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천식,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 의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, 학회발전과 국민건강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2조 (명칭)

학회 연구비라 한다.

제3조 (지원 연구분야)

학회 연구팀, 개인, 지회에서 신청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.

제4조 (연구비 지원규모)

연구 과제 당 연간 최대 2천 만원까지 지원한다.

제5조 (연구기간)

- (1)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,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2년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(2) 연구 시작일은 연구비 지급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(3) 연구기간이 길어져 연구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신청자격)

- (1) 연구과제는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학회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1명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한다.
- (3) 신청한 연구 과제는 타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.
- (4) 연구과제 신청은 연구팀, 지회, 혹은 개인 회원 당 한 개의 연구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심사위원회)

- (1) 학회 연구심사위원회는 이사장, 총무이사, 연구이사, 학술이사, 기획이사, 수련이사로 구성되며,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된다.
- (2) 연구이사는 연구비 지원 과제를 접수 완료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(3)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/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.
- (4)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제8조 (공모과제 신청서류)

- (1) 공모과제 신청서
- (2) 연구요약문
- (3) 연구계획서
- (3)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
- (4)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
- (5)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.

제9조 (연구비 지급 방법, 편성 기준, 및 정산)

- (1) 연구비는 선정된 후 연구기간 동안 선 지출 후 학회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으로 처리한다.
- (2) 연구비는 인건비, 여비, 유인물비, 기술정보비, 재료비 (연구 기자재비, 시약 및 재료비, 전산 처리비),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 (단, 기술 정보비는 5%를 초과할 수 없다.)
- (3) 연구참여자인 학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불이나 상품권 구입에 의한 정산은 불가능하며, 회의 참석자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거마비는 회의록과 참석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정산 처리할 수 있다.
- (3)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 정산하고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연구비는 연구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연구결과 보고서)

- (1)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고, 이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받아야 한다.
- (2)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(AARD 혹은 AAIR 포함)에 연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
- (3)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활동지원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영문 :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ACADEMY OF ASTHMA,
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(KAAACI-2000-00).

국문: 본 연구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비에 의해서 지원됨(KAAACI-2000-00).

- (4) 상기한 논문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제12조 (기타 사항)

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13조

본 규정의 개정은 연구이사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.

2017년 2월 28일 1차 개정

2017년 7월 26일 2차 개정

2020년 2월 27일 3차 개정

2024년 3월 21일 4차 개정